

「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01월 2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02월 04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02월 0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이 대통령령으로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및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의무 규정(안 제2조)
- 다.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안 제1조는 목적
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의무
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
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기 위한 취지의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실행을 위한 조례제정으로
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부.

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)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.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.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
2.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